

전주지방법원 2020. 4. 29 선고 2019가단6661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0. 11. 25 선고 2020나5368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0. 6. 17 선고 2019가단6661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

피 고 1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성

2. C

3. D

4. E

5. F

판결선 고

2020. 4. 29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[목록] 기재 각 부동산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부동산'이라하고, 개별적으로 '제1부동산' 등으로 지칭한다) 중 25/29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77. 4. 11. 접수 제11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피고 B에게, 제2부동산 중, 피고 C, D는 각 3/10지분에 관하여, 피고 E, F은 각 2/10지분에 관하여, 전주지방법원 1977. 5. 20. 접수 제155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및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

○ G가 1972. 7. 28. 사망하면서 그의 처인 H 및 자녀들인 피고 B(3남)와 원고(4남)등 9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.

○ 그 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분할 전의 전북 완주군 I 대 I, 160㎡에 관하여 1977. 4. 11. 피고 B 앞으로 1960. 3. 1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○ 위 I 대지는 1977. 5. 11. 제1, 2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,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77. 5. 20. J 앞으로 1977. 5. 16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기가 마쳐졌다가, 1988. 7. 20. J가 사망하면서 1993. 1. 26. 피고 C, D가 각 3/10지분, 피고 E, F이 각 2/10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저나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,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, 그에 터잡아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, D, E,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므로, G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,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인 산가 사망한 후에 망인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로서,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다.

그러나 한편으로, 을가 제1, 5, 6호증, 제8호증의 1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G가 사망한 후 피고B가 모 H를 부양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몫으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,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따라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권태관

별지